

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-3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2년 9월 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대상만을 정하였을 뿐 위원장의 자격,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을 투명하게 하고
- 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도 같은과 소관인 민간을 포함한 자문 기구인 도시계획위원의 구성과 형평에 맞게 3분의1 범위내로 축소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제3조제1항중 “다만” 앞에 “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한다” 는 자구를 추가함.
-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는 2인 이내로 함(안 제3조제2항제1호).
- 제13조 제2항중 “업무를” 앞에 “납부 방법은” 자구를 삽입함.

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한다. 다만,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.

안 제3조 제2항 제1호중 “3인 내지 5인”을 “5인”으로 하고, “과반수 미만이어야” 를 “2인 이내로”로 한다.

안 제13조 제2항중 “업무를” 앞에 “납부 방법은”을 삽입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<u>위촉한다. 다만</u>,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적으로 정할 수 있다. 1 ~ 3 (생 략)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(이하 “소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3인 내지 5인의</u>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<u>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</u> 한다. 2 ~ 4 (생 략) 제13조(수수료) ① (생 략)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<u>안전도검사수수료는 업무를</u>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제3조(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)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<u>위촉하고,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3분이1 이하로 한다. 다만</u>,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적으로 정할 수 있다. 1 ~ 3 (제정안과 같음)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파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(이하 “소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<u>5인의</u>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.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<u>위원수는 2인 이내로</u> 한다. 2 ~ 4 (제정안과 같음) 제13조(수수료) ① (제정안과 같음)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<u>안전도검사수수료의 납부방법은 업무를</u>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